

『구미시녹지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도시림 등의 조성·관리 및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책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시림의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제명 변경
 - 현행 : 구미시녹지시설관리조례녹지
 - 개정 : 구미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
- 도시림 등의 조성·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3조 ~ 제8조)
 - 도시림 등 조성·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, 주민참여 등
- 녹화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9조 ~ 제10조)
- 가로수의 조성·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1조 ~ 제17조)
 -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, 원인자부담금, 가로수 조성·관리 기준 등

-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의2에서 위임된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8조 ~ 제29조)
-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
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「도로법」, 「건축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녹지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은
 - 상위법인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과 가로수 제거 사업 등의 승인 사업에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